





# 박람회 참가규정 이행 동의서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및 조합, 업체 등을 말한다.
2. ‘박람회’라 함은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말한다
3. ‘주관처’라 함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4. ‘전시’라 함은 박람회장에서의 전시·판매·체험 등을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처가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처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처는 참가횟수, 신청접수 순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참가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박람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처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조 (전시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관처의 허가 없이 배정된 부스의 권리를 타인·타업체에 매매·양도 하는 경우 주관처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참가자에게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처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관처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관처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5조 (납입조건)

1. 참가자는 참가비의 10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9월 11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참가자가 지정한 기간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처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